
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학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7. 1.

발 의 자 : 이학재 · 이현승 · 정종섭
안규백 · 박완수 · 이우현
임종성 · 김현아 · 윤영일
주승용 · 전현희 · 김도읍
정동영 · 김명연 · 서형수
김재경 · 정성호 · 이찬열
함진규 · 정태옥 · 주호영
민홍철 · 김무성 · 김관영
유승민 · 김세연 · 유기준
하태경 · 원유철 의원
(2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988년 이후 현재('16년 4월말)까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839명으로, 이 중 49%인 6만 4,767명이 생존해 있는바,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서,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,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국민적 통합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.

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 신설).
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이산가족의 날)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2조의2(이산가족의 날) ① 남</u> <u>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</u> <u>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</u> <u>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</u> <u>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일을</u> <u>이산가족의 날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</u> <u>항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의 취</u> <u>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</u> <u>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</u> <u>다.</u></p>